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0일,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의원)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¹⁾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1) 낚시어선 승선자신고 시스템 ‘낚시海앱’. ☞ 시스템의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정태)

현행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승선자명부 제출과 관련해 ‘전자문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8. 기타 사항

없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현행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승선자명부 제출과 관련해 ‘전자문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함.

수정주요내용

가. 승선자명부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를 ‘전자문서로 된 명부’로 수정함(안 제33조제5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5항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을 “전자문서로 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선자명부(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제외한다)-----.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전자문서로 된-----.

법률 제 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승선자명부”를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 어선에 <u>승선자명부의</u> 사본을 3 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u> <u>된 명부는 제외한다)</u> ----- -----.